

조 정 조 서

사 건 [redacted] 이혼 및 위자료 등
[redacted] 이혼 및 위자료 등

원 고 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

판 사
조 정 위 원 [redacted]

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[redacted]

출석

피고 및 소송대리인 [redacted]

각 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1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2.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.

가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5,000,000원을 지급하되, 이를 5회로 분할하여 2025. 1.부터 2025. 5.까지 매월 20일에 5,000,000원씩 지급한다. 만일 피고가 위 각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미지급

금액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,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 등 모두 포함)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.

다.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.

3. 피고는 원고가 [REDACTED]의 피보험자 명의 및 보장대상에서 피고를 제외하는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한다.

4.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, 재산분할,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,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(민사, 형사, 가사 등 모두 포함)을 제기하지 않는다.

5.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6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